

제 921 호
1982. 7.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편집 : 공보관 전영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보

차 례

◎ 조 제	1649 호	: 서울특별시남부부녀보호지도소설치조배중개정조례	3
제	1650 호	: 서울특별시아동상담소설치조배중개정조례	3
제	1651 호	: 서울특별시청소년사업관설치조배중개정조례	4
제	1652 호	: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설치조배중개정조례	4
제	1653 호	: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배중개정조례	6
제	1654 호	: 서울특별시립대학·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	7
제	1655 호	: 서울특별시정원조배중개정조례	11
제	1656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배중개정조례	15
제	1657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배중개정조례	16
제	1658 호	: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배중개정조례	16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659	호	:	서울특별시	동부여자기술원설치조배	중개정조배	17	
제	1660	호	:	서울특별시	종합사업소설치조배	중개정조배	17	
제	1661	호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배	중개정조배	17	
제	1662	호	:	서울특별시	민방공통제소설치조배	중개정조배	18	
제	1663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배	중개정조배	18	
규				회				
제	1983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	19	
제	1984	호	:	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20	
제	1985	호	: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21	
제	1986	호	:	서울특별시	구의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22	
제	1987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23	
고				시				
제	273	호	: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결정	및지적승인	27	
제	274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계획결정	및변경결정	29	
제	275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적승인		30	
제	276	호	: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시행허가		31	
제	277	호	: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			31	
제	278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변경인가	32	
제	27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34	
제	28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34	
제	281	호	:	1982년도제1회	서울특별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35	
제	282	호	:	육류연동가격고시			36	
제	28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6	
제	284	호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37	
제	285	호	: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결정	및지적승인	37	
제	286	호	:	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	결정		38	
공				고				
제	322	호	:	환지계획일부	변경인가	및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38
제	325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완료공고		39	
제	326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39	
제	327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40	
제	328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	공인신조(개각및폐기)		40	
				등록공고			40	
제	329	호	: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41
제	330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공람공고	41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남부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49 호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정원란 7급 " 2 "를 " 1 "로, 정원내용란 "행정직 1 "를 삭제하고, 고용직정원란 " 20 "을 " 23 "로, 정원내용란 부모 " 2 "는 " 4 "로, 대장정리 " 1 "를 " 2 "로, 합계란 " 27 "를 " 29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아동상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50 호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p>◎ 서울특별시조례 제 1651 호</p> <p>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p> <p>중 6 급 정원란 " 1 " 를 " 3 " 으 로, 정원내용란에 " 별정직 2 " 를 추 가하고, 7 급정원란 " 7 " 을 " 5 " 로, 정원내용란 " 별정직 7 " 를 " 별 정직 5 " 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th> <th>급</th> <th>정</th> <th>원</th> <th>정</th> <th>원</th> <th>내</th> <th>용</th> </tr> </thead> <tbody> <tr> <td>5</td> <td>급</td> <td>1</td> <td></td> <td>별정직 1</td> <td></td> <td>(</td> <td>소장)</td> </tr> <tr> <td>6</td> <td>급</td> <td>3</td> <td></td> <td>별정직 3</td> <td></td> <td>(</td> <td>아동복지지도원)</td> </tr> <tr> <td>7</td> <td>급</td> <td>2</td> <td></td> <td>행정직 1</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간호직 1</td> <td></td> <td></td> <td></td> </tr> <tr> <td>8</td> <td>급</td> <td>15</td> <td></td> <td>별정직 15</td> <td></td> <td>(</td> <td>아동복지지도원)</td> </tr> <tr> <td>9</td> <td>급</td> <td>1</td> <td></td> <td>행정직 1</td> <td></td> <td></td> <td></td> </tr> <tr> <td>고</td> <td>용</td> <td>직</td> <td>11</td> <td>운전원 2, 수 위 2, 타자원 1, 보 모 2, 취사부 1, 청 부 2, 사 환 1</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33</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1		별정직 1		(소장)	6	급	3		별정직 3		(아동복지지도원)	7	급	2		행정직 1								간호직 1				8	급	15		별정직 15		(아동복지지도원)	9	급	1		행정직 1				고	용	직	11	운전원 2, 수 위 2, 타자원 1, 보 모 2, 취사부 1, 청 부 2, 사 환 1				계			33					<table border="1"> <thead> <tr> <th>제</th> <th>급</th> <th>정</th> <th>원</th> <th>정</th> <th>원</th> <th>내</th> <th>용</th> </tr> </thead> <tbody> <tr> <td>5</td> <td>급</td> <td>1</td> <td></td> <td>별정직 1</td> <td></td> <td>(</td> <td>소장)</td> </tr> <tr> <td>6</td> <td>급</td> <td>3</td> <td></td> <td>별정직 3</td> <td></td> <td>(</td> <td>아동복지지도원)</td> </tr> <tr> <td>7</td> <td>급</td> <td>2</td> <td></td> <td>행정직 1</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간호직 1</td> <td></td> <td></td> <td></td> </tr> <tr> <td>8</td> <td>급</td> <td>15</td> <td></td> <td>별정직 15</td> <td></td> <td>(</td> <td>아동복지지도원)</td> </tr> <tr> <td>9</td> <td>급</td> <td>1</td> <td></td> <td>행정직 1</td> <td></td> <td></td> <td></td> </tr> <tr> <td>고</td> <td>용</td> <td>직</td> <td>11</td> <td>운전원 2, 수 위 2, 타자원 1, 보 모 2, 취사부 1, 청 부 2, 사 환 1</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33</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1		별정직 1		(소장)	6	급	3		별정직 3		(아동복지지도원)	7	급	2		행정직 1								간호직 1				8	급	15		별정직 15		(아동복지지도원)	9	급	1		행정직 1				고	용	직	11	운전원 2, 수 위 2, 타자원 1, 보 모 2, 취사부 1, 청 부 2, 사 환 1				계			33				
제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1		별정직 1		(소장)																																																																																																																																										
6	급	3		별정직 3		(아동복지지도원)																																																																																																																																										
7	급	2		행정직 1																																																																																																																																													
				간호직 1																																																																																																																																													
8	급	15		별정직 15		(아동복지지도원)																																																																																																																																										
9	급	1		행정직 1																																																																																																																																													
고	용	직	11	운전원 2, 수 위 2, 타자원 1, 보 모 2, 취사부 1, 청 부 2, 사 환 1																																																																																																																																													
계			33																																																																																																																																														
제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1		별정직 1		(소장)																																																																																																																																										
6	급	3		별정직 3		(아동복지지도원)																																																																																																																																										
7	급	2		행정직 1																																																																																																																																													
				간호직 1																																																																																																																																													
8	급	15		별정직 15		(아동복지지도원)																																																																																																																																										
9	급	1		행정직 1																																																																																																																																													
고	용	직	11	운전원 2, 수 위 2, 타자원 1, 보 모 2, 취사부 1, 청 부 2, 사 환 1																																																																																																																																													
계			33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82년 7월 23일</p> <p>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p>	<p>◎ 서울특별시조례 제 1652 호</p> <p>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설 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제 3조 중 " 3 급 " 을 삭제한다. 제 5조 중 " 4 급지방보건연구원 " 을 " 지방보건연구원 " 으로 한다. 제 7조 및 제 8조 중 " 5 급 " 을 삭제한다. 제 9조의 지방수의관 앞에 " 5 급 "	을 삽입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별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지방공무원 정원표

계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연구직계	63	연구원 14, 연구사 49
일반직계	93	
4 급	3	행정직 1, 토목직 1, 수의직 1
5 급	9	행정직 2, 토목직 2, 기계직 1, 화공직 1, 축산또는 수의직 2, 행정또는 화공직 1
6 급	16	행정직 3, 토목직 2, 기계직 2, 화공직 2, 축산또는 수의직 6, 건축기계 또는 전기직 1
7 급	35	행정직 5, 토목직 3, 기계직 3, 화공직 2, 축산또는 수의직 22
8 급	12	행정직 4, 기계직 6, 화공직 2
9 급	18	행정직 3, 토목직 2, 기계직 13
별 정 직	21	6 급상당 4 (공해 측정장비 기술요원) 7 급상당 9 (공해 측정기사) 8 급상당 8 (공해 측정장비 관리원 2, 공해 측정기사 6)
고 용 직	70	전공 2, 냉난방공 1, 주위 7, 타자원 3, 청부 6, 차량정리원 7, 민원보조원 4, 운전원 12, 보조수 9, 사환 5, 소독수 1, 시험원 9, 전달부 1, 경비원 1, 수리공 2
합 계	247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53 호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지방관리관"을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 2 항 "제 4 호"를 "제 5 호"로 하고,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사업소의 지도감독 총괄
부
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종합건설본부 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공사본부 정원표

계	급	정원	정원내용
3	급	2	행정· 또는 시설직 1, 3급상당 별정직, 전문직원 또는 교환교수 1
4	급	6	행정직 1, 공업직 1, 농림 또는 건축직 1, 토목직 2, 건축직 1
5	급	19	행정직 3, 농림직 2, 전기 또는 기계직 3, 토목직 7, 건축직 4
6	급	40	행정직 6, 기계직 4, 전기직 5, 화공직 2, 토목직 14, 건축직 7, 농림직 2
7	급	77	행정직 12, 기계직 8, 전기직 8, 화공직 2, 농림직 5, 토목직 30, 건축직 12
8	급	42	행정직 9, 기계직 4, 전기직 4, 화공직 1, 농림직 3, 토목직 14, 건축직 7
9	급	17	행정직 4, 농림직 1, 기계직 2, 전기직 2, 토목직 5, 건축직 3
고	용 직	36	타자원 8, 계도사 1, 운전원 9, 사환 9, 수위 2, 보조수 2, 통신원 1, 전달부 1, 대장정리원 3
계		239	

나. 지원사업소 정원표				
계급별	정원	중기관리사업소	건설사업소	건설자재사업소
5 급	6	행정직 1	행정 또는 토목직 4	행정 또는 토목직 1
6 급	18	행정직 1 기계직 2	행정직 4 전기직 4, 토목직 4	행정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1, 토목직 1
7 급	21	행정직 1 기계직 3	행정직 4, 전기직 4 토목직 4	행정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3, 토목직 1
8 급	31	행정직 2 기계직 1	행정직 8, 기계 또는 전기직 4 토목직 12	행정직 3, 기계 또는 전기직 1
9 급	17	행정직 1 기계직 2	기계 또는 전기직 7 토목직 5	기계 또는 전기직 1 토목직 1
별정직 기능직	1 232	6 등급 : 기계장 6 7 등급 : 기계장 32 8 등급 : 기계원 1 9 등급 : 기계원 5	7 등급 : 기계장 79 전기장 8 통신장 1 8 등급 : 기계원 63	6 급 1 (화학기사 1) 7 등급 : 기계장 34 전기장 1 8 등급 : 기계원 1
고용직	185	수위 2, 타자원 1 대장정리원 2 운전원 2, 보조수 15, 사환 1, 형 부 2, 기계공 1	운전 14, 천공 49 수위 4, 목공 1, 타자 원 4, 수리공 9, 대장 정리원 6, 전일부 4, 보조수 24, 사환 4, 형 부원 10	천공 3, 기계공 1 수위 1, 목공 1, 타 자원 1, 감시원 1 대장정리원 1, 수 리공 18, 사환 1 형부원 1, 사환 1
합 계	511	84	344	83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대학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54 호
서울시립대학설치
조례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1 조 (설치)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제 2 조 (위치) 대학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산 8-3에 둔다.

제 3 조 (운영의 원칙) 대학은 설치 목적과 교육법제 10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직할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 4 조 (학부, 학과)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으로 정한다. 단, 대학의 학과설치,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및 재정에 관한 사항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임용 및 대학원장, 학부장, 기획실장, 과장 및 학과장의 임용 또는 임용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대학원) ① 교육법제 10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더욱 깊이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다.

② 제 1 항의 대학원 이외에 도시행정분야를 담당할 고급인력의 양성

을 위하여 도시행정 대학원을 둔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학장 및 교원)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둔다.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대학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등의 교원을 둔다.

제 7 조 (공무원의 정원) 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8 조 (대학원장, 학부장 및 학과장)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학부에 학부장을,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과 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 학부장, 학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학부,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교육한다.

④ 야간강좌의 관리를 위하여 야간강좌부를 둔다.

제 9 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 및 기획실을 두며, 대학원에는 교학과를 둔다.

② 교무과, 학생과, 기획실 및 대학원교학과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서

<p>기관으로 보한다.</p> <p>교무과, 학생과에는 과장보를 두며 과장보는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p> <p>③교무과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과정의 편성 2. 교원과 학생정원의 관리 3. 입학, 휴학, 퇴학, 전학, 졸업, 학사경고 및 학위수여 4. 수업시간표, 시험 및 성적관리 5. 수업관리, 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6. 교원의 인사 및 교원의 연구 7. 교구, 교육매체의 수급 및 관리 <p>④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학생상설, 학생집회, 행사, 간행물에 대한 지도 3. 학생병사 동원 및 훈련 4.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보건 및 후생학생회관 기타 학생 후생복지 관리 6.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7. 졸업생의 취업 및 재학생의 부직에 대한 사항 8. 공무원 특별임용 관리 <p>⑤기획실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단기 발전계획 2. 대학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 분석 3. 학과설치 및 대학기구의 설치와 폐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대학운영 및 제도 개선 5. 대학발전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⑥사무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 문서, 관인 관속 2. 인사, 법령, 규정 3. 비상계획 및 전방위 4.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 급여 및 연금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시설 설비들의 경선, 환경관리 7. 학생등록금의 징수 8. 대학내 다른부서의 수탁에 손하지 아니하는 사항 <p>⑦대학원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과정 및 시간표 작성 2. 학생정원의 관리 3. 입학, 휴학, 퇴학, 학위수여 4. 시험 및 성적관리 5. 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p>제 10 조 (부속, 부설기관) ①대학에 다음 부속, 부설기관을 둔다.</p> <p>②부속기관...중앙도서관, 박물관, 전자계산소, 학생보건소, 외국어어학원, 시청각교육원</p> <p>③부설기관...수도권개발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도시새마을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p> <p>④부속, 부설기관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p>
--	--

단, 학생보건소장은 시립병원의 의사 또는 교의로서 겸보할 수 있다

⑤부속, 부설기관의 장은 학장의 명을받아 그 부속, 부설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중앙도서관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 1. 도서구입의 선정
- 2. 도서등록에 관한 사항
- 3. 도서집계, 제본, 분류,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사항

⑦박물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문화재유물의 수집과 관리
- 2. 문화재유물의 분류, 등록, 전시
- 3. 유적지의 발굴 및 민속자료의 조사 연구

⑧전자계산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프로그래밍공 전산 처리
- 2. 학생에 대한 전산실습 및 관리
- 3. 대학행정업무의 전산화

⑨학생보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진료
- 2. 학생보건카드 관리
- 3. 대학구내의 위생관리

⑩외국어어학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어학실 관리
- 2. 어학연수생의 관리
- 3. 어학교재 제작 및 대출

⑪시청각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시청각 교육 매체 제작
- 2. 시청각 기재 관리
- 3. 시청각 수업지원

⑫수도권개발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수도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계획
- 2. 도시문제 연구
- 3. 도시민의 생활 환경조사 연구

⑬학생생활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 생활조사 연구
- 2. 집단 및 개인상담 지도
- 3. 직업진로지도 및 상담

⑭도시새마을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도시새마을운동 전개
- 2. 새마을교육 실시
- 3. 도시새마을 사업의 연구

⑮산업경영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도시산업 및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 2. 재무, 회계원가, 세무에 대한 연구
- 3. 시민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제 11조 (감독)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 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시립대학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1	행정직 1			
5 급	2	행정직 1, 건축직 1			
6 급	9	행정직 6, 농림직 1, 건축직 1, 전기직 1			
7 급	9	행정직 7, 사서직 1, 임업직 1			
8 급	8	행정직 5, 전기직 1, 건축직 1, 기계직 1			
9 급					
별정직	3	7 급상당 (전산처리관 1) 1 8 급상당 (전산처리사 1) 1 9 급상당 (천공원 1) 1			
기능직	2	7 등급 : 전기장 1, 기계장 1			
고용직	52	운전원 3, 냉난방공 1, 수위 5, 목공 2, 타자원 1, 원정 1, 교환원 3, 대장정리원 9, 감사원 2, 청부 8, 전달부 1, 수리공 1, 전공 2, 잡무원 6, 사환 4			
합 계	86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p> <p>◎서울특별시조례제 1655 호</p> <p>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p>			<p>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p> <p>가. 일반회계정원표, (별표 1-1)</p> <p>경찰국 정원표 등</p> <p>(별표 2)</p> <p>구청 정원표를 별지로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본 청 지방 공무원 정원 표	
가. 일반회계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2.3 급	3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 또는 3급) 3	
4 급	3	행정직 3	
5 급	172	행정직 129, 행정 또는 전기직 1, 행정 또는 화공직 1, 행정 또는 수산직 1, 행정 또는 보건직 1, 행정 또는 토목직 2,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 2, 행정 또는 지적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1, 전기직 1, 화공 또는 보건직 2, 화공 또는 건축직 1, 농림직 3, 농림 또는 토목직 1, 축산직 1, 축산 또는 수의직 1, 의무 또는 약무직 1, 의무 또는 간호직 1, 토목직 9, 토목 또는 건축직 4, 토목 또는 지적직 2, 건축직 3, 지적직 2, 통신직 또는 전무직 1	
6 급	293	행정직 199, 기계직 10, 전기직 8, 섬유직 1, 화공직 6, 보건직 6, 농림직 7, 축산직 2, 수의직 4, 약무직 2, 간호직 1, 수산직 1, 토목직 26, 건축직 10, 지적직 7, 통신직 1, 전송직 2	
7 급	383	행정직 273, 기계직 5, 전기직 10, 화공직 5, 보건직 4, 농림직 2, 축산직 1, 수의직 2, 약무직 4, 간호직 6, 수산직 1, 토목직 41, 건축직 14, 지적직 13, 통신직 1, 전송직 1,	
8 급	16	행정직 12, 지적직 3, 통신직 1	
9 급	4	행정직 3, 간호직 1	
별정 직	121	5급상당 8 (비서관 4, 문화재담당 1, 예비군대대장 1, 훈련계장 1, 영화제작감독 1) 6급상당 37 (비서 1, 문화재요원 1, 화생방요원 4, 전산처리관 10, 기계처리사 3, 항공사진사주임 1, 판독사주임 5, 영화 및 편집요원 1, 인력진단요원 2, 자료분석요원 2, 시사편찬전문위원 3, 도시개발자료요원 1, 시정연구원 1, 수석가정상담원 1, 수석부녀상담원 1) 7급상당 20 (전산처리관 5, 기계처리사 1, 판독사 3, 화생방요원 2, 공관비서 1, 비상계획요원 1, 자료조사원 1, 항공판독사 3, 영상조정기사 1, 해외자료조사요원 1, 친공관리자 1)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6 급	867	17, 행정 또는 농림직 17, 토목직 8, 건축직 17 행정직 689, 행정·화공 또는 보건직 34, 행정 또는 농림직 34, 토목직 51, 건축직 34, 지적직 25
7 급	1,121	행정직 797, 기계 또는 전기직 16, 화공직 12, 농림직 34, 축산 또는 수의직 22, 보건직 35, 토목 및 건축직 177, 지적직 28
8 급	1,572	행정직 1,194, 기계 또는 전기직 25, 화공직 21, 농림직 43, 축산 2, 보건직 34, 간호직 1, 토목 또는 건축직 192, 지적직 60
9 급	1,556	행정직 1,225, 기계 또는 전기직 12, 화공직 1, 농림직 18, 축산직 6, 보건직 21, 토목 및 건축직 206, 지적직 67
별정직	57	6급상당 17 (민방위교육훈련담당) 7급상당 27 (고압가스관리기사 4, 위험물취급주임 1, 화생방요원 22) 8급상당 13 (일반부녀상담원)
기능직	39	7등급: 전기장 28, 기계장 11
고용직	2,177	타자원 165, 차트사 4, 수위 28, 운전원 265, 민원보조원 38, 교환원 51, 전공 175, 사진사 7, 기계공 44, 대장정리원 52, 의무원 13, 원정 37, 경비원 24, 감시원 225, 청부 80, 전담부 17, 수로원 34, (주차) 감시원 228, 매표원 98, 선로수 6, 조사원 96, 병난방공 4, 상담원 3, 보조수 26, 안내원 33, 잡무원 15, 청소원 56, 사환 339, 교도원 13
합 계	7,771	
나. 특별회계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34	행정직 17, 토목직 17
6 급	102	행정직 51, 기계 또는 전기직 17, 토목직 34
7 급	128	행정직 89, 기계 또는 전기직 8, 토목 또는 건축직 31
8 급	245	행정직 187, 기계 또는 전기직 6, 토목 또는 건축직 52
9 급	349	행정직 276, 기계 또는 전기직 14, 토목 또는 건축직 59
기능직	24	7등급: 전기장 24
고용직	923	타자수 34, 수위 6, 운전원 28, 전공 14, 기계공, 수도기수 34, 조절수 337, 수도정비공 269, 안내원 17, 직공 97, 보조수 46, 청부 6, 사환 34
합 계	1,805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656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 근로자회관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역
6 급	1	행정직 1
7 급	2	행정직 1, 별정직 1 (영양사)
9 급	2	행정직 2
고 용 직	12	냉난방공 1, 청부 1, 수의 1, 복공 1, 사. 조공 사 2, 보조수 3, 취사부 3
계	17	

(별표 2)

지방공무원정원표

나. 부녀복지관

계 급	정 원	정 원 내 역
5 급	1	행정직 1
6 급	2	행정직 2
7 급	2	행정직 2
8 급	3	행정직 2
별 정 직	22	7 급상당 9 (훈련교사 8, 영양사 1) 8 급상당 13 (훈련교사 13)
기 능 직	2	7 등급 : 기계장 1, 전기장 1

계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고 용 직	24	전공 1, 냉난방공 1, 수위 2, 청부 4, 취사부 5 전달부 1, 민원보조원 1, 타자원 1, 운전원 1 사감 2, 사환 1, 경비원 2, 상담원 2
계	55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2년 7월 2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p> <p>◎서울특별시조례제 165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3 조중 "지방서기관으로"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기정"으로 한다.</p> <p>(별표)중 4급란 "행정직 1"를 "행정 또는 농림직 1"로 하고, 7급 정원란 "5"을 "6"으로, 정원내용란의 수의직 "1"을 "2"로, 8급 정원란 "3"을 "2"로, 정원내용란의 "수의직 또는 축산직 1"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2년 7월 2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p> <p>◎서울특별시조례제 165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5 조 제 2항중 "지방기계기정 또는 지방전기기정"을 "지방공업기정"으로 하고,</p> <p>(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중 4급 정원내용란의 "전기 또는 기계직 1"을 "공업기정 1"로 한다.</p>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부여자기술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 제 1659 호

서울특별시립동부여자기술원
개정조례설치조례중

서울특별시립동부여자기술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정직란 "9급5"를 "8급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 제 1660 호

서울특별시종합종말처리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소장은 지방기계기정, 지방전기기정 또는 지방토목기정으로"를 "소장은 지방공업기정 또는 지방토목기정"으로 하고

(별표) 지방공무원정권표 4급정원내용란 "기계, 전기 또는 토목직1"를 "공업직 또는 토목직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 제 1661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능직 정원란 "47" 를
 "49" 로, 정원내용란 기능직 7등급
 기계장 또는 전기장 "30" 을 "32"
 로, 고용직정원 "851" 를 "852" 으
 로, 정원내용란 보조수 "17" 를
 "118" 로 하며, 합계란 "1060" 를
 "1063" 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민방공통제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662 호

서울특별시민방공통제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민방공통제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의 기능직 다음에 고용직
 란을 신설하여 정원 "1" 정원
 내용 "사환1" 을 추가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663 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공
 무원 정원표의 고용직란중 타자원
 "2" 를 "14" 로, 대장정리원 "10"
 을 "8" 로, 민원보조원 "11"
 을 "7" 로, 보조수 "12" 를
 "6"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
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규칙제 1983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공무원교육원 (이하 " 교육원 " 이
라한다) 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무과) ① 서무과에 서무계
와 경리계를 두고, 제장은 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② 서무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기본운영계획 및 집행조정
- 나. 문서, 관인관수, 청중단속
- 다. 인사, 복무 및 직원후생
- 라. 도서실, 식당, 직장세마을금고
운영
- 마. 직장에비군 및 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 바. 청사, 장비 및 차량유지관리
- 사. 기타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 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나. 회계 및 물품관리
- 다. 급여, 연금, 국민저축 및 의
료보험

제 3 조 (교학과) ① 교학과에 기획부
가계, 교무계 및 지도직원 등교
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한다.

② 교학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평가계

- 가. 교육 기본계획수립
- 나. 교과의 연구 및 발전
- 다. 기관, 장서의 관리와 교구
- 라. 교육훈련선진화 방안연구
- 마. 학회의 배·거정
- 바. 교육계획실시위원회, 교구보장
위원회 운영
- 사. 교육훈련비교의 연구발전
- 아. 교육훈련 실적평가 및 연구
- 가. 성적 사정위원, 운영 및 관
자관리 규정의 제정운영
- 차.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 무 계

- 가.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 나. 피교육자 수료증 및 상장교부
- 다. 부교재연구편찬 및 발간
- 라. 교육안내 및 과정소개
- 마. 교육시간표작성 및 운영
- 바. 강사초빙 및 강사로지출
- 사. 강의실 교육기자재 및 교육 보조자료 관리

3. 지도 제

- 가.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급 편성

- 나.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 다. 교재 및 재지급품 수불
- 라. 분임연구과제 선정 및 분임 생활지도

- 마. 피교육자 자치생활 지도
- 바. 피교육자 퇴교 및 사고처리
- 사. 생활관 및 의무실 운영
- 아. 사감단 운영

제 4 조 (전형실) ①원장 밑에 전형실을 두고, 실장은 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전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서울특별시 6 급이하 공무원의 공개 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나. 서울특별시 6 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 시험
- 다.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 라. 기타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마. 서울특별시의 각종 자격면허 시험실시

제 5 조 (전임 교관) 교수부장 밑에 자체전임교관을 두고, 전임교관은 원장의 명을 받아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규칙제 1984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소방경 또는"을 삭제하고, 제 2 항 제 1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방호과) 방호과에 방호제, 예방제와 지도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1. 방 호 제

가.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나. 외용소방대 및 부녀소방대운영

다. 소방수리의 유지관리

라. 화재현장조사 처리 및 통계 분석

마. 화재방어 검토회의

바. 민방위 및 전시운영

사.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 방 제

가. 화재예방 계획수립

나. 화재예방 및 위험물에 관한 민선사항

다.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

라. 소방시설 시공신고처리

마.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지도 감독

바. 위험물 취급주임 교양

사. 소방설비업 등록

아. 소방용 기계 기구판매업 신고 및 단속

자. 화재경계업무 및 경계지구 지정

차.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3. 지 도 제

가. 소방검사 및 소방시설 축진 계획 수립 시행

나. 지도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다. 방염처리

라. 소방법 위반사건조사 및처리

마. 소방계획수립

바. 소방훈련지도

사. 방화관리자 강습 및 교양

아. 어린이 소방대지도

자. 불조심 계몽지도

차. 소방홍보계획

카. 기타 지도업무와 관련된 계획수립 시행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포함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성

○서울특별시규칙제 1985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 비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운동장시설의 사용허가

사. 운동장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규칙제 1986 호

서울특별시구의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 사 제

가. 공무원의 임용

나.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제다.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카. 복무, 교육훈련 및 상훈

마. 구인사위원회, 교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바. 보수, 승급, 연금, 의료보험 및
직원후생

사. 공무원 신분관계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동조제 3 호 카항다음에 "타, 파" 및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동장입면 및 정년연장 협의

파. 동장인사위원회의운영 및 동소
속공무원 인사 내신

하.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 시설
운영지도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중 "마"목을
삭제하여, 제 2 호의 "아" 목으로
하고, 1 호중 "바"목 및 "사"
목을 "마"목 및 "바" 목으로
한다.

제 8 조 제 2 항 제 2 호중 "자동차세"
를 "등록세"로 한다.

제 9 조 제 2 항중 "등록세"를 "자
동차세"로 한다.

제 10 조 제 2 항 제 1 호의 "라"목
을 삭제하고, "마"목 및 "바"
목을 "라"목 및 "마" 목으로
한다.

제 11 조 제 2 항 제 2 호 "바"목 다
음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사. 유기장 허가 및 지도 감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 8 조 및 제 9 조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지제가 개정되
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규칙제 1987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다음에 제 2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조의 2 (종합민원실) ①시민고정 사항 및 민원신고사항을 접수처리 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두고,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종합민원실에 민원 1반과 민원 2반을 두고 민원 1반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민원 2반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③종합민원실의 반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 1반

보건위생, 노동, 사회, 세무, 회계, 교통, 산업경제, 주민등록, 호적, 병사에 대한

가. 민원상담 및 처리

나. 민원의 사실조사와 위법부당

처리사항의 시정

다. 민원업무의 제도개선 사전건의
라. 공무원 견문사항 처리

마. 기타 실내 민원 2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민원 2반

토목, 도시계획, 건축, 주택, 재개발, 상하수도, 가스, 환경, 공해소방에 대한

가. 민원상담 및 처리

나. 민원의 사실조사 및 위법부당처리사항 시정

다. 전화 민원신고변태 운영

제 3조 제 2항제 2호중 "라" 목을 삭제하고, "마" 목을 "라" 목으로 한다.

제 4조 제 2항제 1호중 "다" 목을 "바" 목으로 하고, "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도권 연구개발처 계획

제 8조 제 2항 제 1호중 "사" 목을 "아" 목으로 하고, "사"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행정법규 상담실운영

제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밑에 감사 1계, 감사 2계, 감사 3계, 감사 4계, 감사 5계 및 환경순찰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감사 5계장은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할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의 계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1계

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수감준비 및 결과의 처리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비위조사 및 징계 제청

라. 시비보조단체, 시비투자기관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

마. 관내 다른 담당관 및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사2계

가.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처분

나. 감사관실 접수, 청원서, 진정서 처리상황 종합

다. 시민 여론 청취분석 시정반영

라. 특명사항 조사보고 및 조치

3. 감사3계

가.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처분

나. 자체감사결과의 처리 및 심사분석

다. 특명사항 조사보고 및 조치 (총괄)

4. 감사4계

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나. 봉사검열 및 민원감사

다. 중요사업 추진확인

라.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감사 및 징계처분

5. 감사5계

가.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감정

나. 기타 기술분야 감사에 대한 협조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감사, 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6. 환경순찰계

가. 환경순찰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무허가 및 옥상불량건물,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잡상인등)

나. 환경순찰업무의 지도감독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환경에 관한 조사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의 "파" 목을 "거" 목으로 하고, "파" 목 및 "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청원경찰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하. 종합운동장의 운영 및 건설 총괄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 조 (인사과) ①인사과에 인사기획계, 보임계, 교과계 및 교육훈련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기획계

가. 인사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나. 인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모집관리 (공채, 특채, 전직)

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전문직 인사관리

바. 보수에 관한 사항

사.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후생에 관한 사항

자.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임계

가. 일반직 (행정, 기술, 연구)인사

나.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

다. 공무원증, 재직 및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

라. 공무원 전력조회, 신원조회 및 신원특이사항 관리

마. 비밀 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바. 군사원호대상자 취업 배정에 관한 사항

3. 교과계

가.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상훈 및 공적 심사위원회 운영

다. 근무성적 명정 및 인사명정 관리

라.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작성 관리

바. 경력명정에 관한 사항

사. 비위 면직자 관리

아. 고충 심사위원회 운영

자. 공무원 해외출장 및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차. 공무원 경직학과 및 해외이주 등의

카.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계

가. 교육훈련계획수립의 총괄

나. 직장훈련 및 특별훈련 실시

다.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 감독

마. 기타 직원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제 2 항 제 3 호의 "자"를 내지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아교육 종합계획수립

차. 유아교육시설 입지선정 및 투자계획수립시행

카. 유아교육시설의 운영관리지도

타. 교사연수 및 훈련계획 수립

파. 유아교육 운영실적평가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민원업무총괄 및 구청구민원행정 지도감독

제 1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 조 (새마을지도과) ① 새마을지도과에 새마을계획계, 새마을교육

계와 새마을사업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새마을지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계획계

가. 새마을운동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나. 새마을사업의 실적 평가

다. 각종 직장 새마을운동

라. 새마을 상황실 운영

마. 새마을 성급 및 성품관리

바. 소바결약운동의 종합조정

사. 새마을지도자 관리

아. 새마을장학금 지급

자.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새마을교육계

가.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양성

나. 새마을교본 작성

다. 새마을운동 홍보

라. 새마을 수범사례발굴 및 보급

마. 새마을운동 기록보존

3. 새마을사업계

가. 새마을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동단위 새마을사업의 총괄

다. 새마을금고 운영 및 육성 지도

라. 일반시설공사의 취로 알선

마.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

나.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사. 지역새마을 및 자연보호운동

아. 기타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제 23조 제 2 항중 "자동차세" 를 "등록세" 로 "등록세" 를 "자동차세" 로 한다.

제 25조 제 2 항 제 3 호중 "가" 목을 삭제하고, "나" 목 내지 "사" 목을 "가" 목 내지 "바" 목으로 하며, "사"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유기장 업무의 지도감독

제 27조 제 2 항 제 1 호중 "바" 목을 삭제하고, "사" 목을 "바" 목으로 한다.

제 29조 제 2 항 제 3 호중 "라" 목을 삭제하고, "마" 목 및 "바" 목을 "라" 목 및 "타" 목으로 하며 "다" 목중 "시범어린이집" 을 삭제한다.

제 65조 제 1 항중 "경비제", 경호계, 방호계" 를 "경비 1 계, 경비 2 계, 경호계" 로 하고, 제 2 항의 제 2 호를 제 3 호로 하고 제 1 호 및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비 1 계

가. 과내직원의 복무 및 인사

나. 비상동원급식비 운영

다. 다중 범죄진압대책 및 기동

대응 진압부대 운영감독

라. 야간통행증 발급

마. 검문소 및 초소 운영지도
바. 기타 과내 다른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비 2계

가. 일반경비 (행사, 혼잡, 재해)
계획수립 및 시행

나. 비상경계계획수립 및 지도
감독

다. 비상소집실시 및 병력동원

라. 외국공관 경비 지도감독

마. 경찰국 직원의 숙소부 관리

바.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및 운
영 지도

사. 용역경비에 관한 사항

아. 민방위 및 풍수 피해 협조
업무

제 7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0 조 (정보과) ①정보과에 1계,
2계, 3계, 5계 및 정보분실을
두고, 계장 및 실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정보과의 계 및 분실의 분장사
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7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1 조 (대공과) ①대공과에 1계,
2계 및 대공분실을 두고, 계장
과 분실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
로 보한다.

②대공과의 계 및 분실의 분장사
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73호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 등법시행령 제7조제2, 도
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3조, 4, 5항
과 건설부고시 제 521호 (81.12.31)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
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비
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정 도시
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7. 20

서울특별시장

○ 고속철도 (본선 및 부대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지하철 2호선 일부구간 (행당동로타리 ~ 한양대앞) 폭원 변경						
구분	시 설 명	연장 (km)	위 치			비 고
기정	고속철도 2호선	1.37	시청 - 울지로 - 왕십리 - 한양대 - 성수동 - 화양동 - 잠실동 - 삼 성교 - 서초동 - 사당동 - 서울대 입구 - 봉천동 - 도림동 - 영등포 - 서교동 - 신촌 - 아현동			행당동로타리 - 한양대앞간폭원 2미터 - 4미터 폭원변경
변경	"	"	"			
• 지하철 2호선 서소문정차장 출입구 위치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폭(M)	연장(M)	면적 (㎡)	비 고
기정	서소문정차장	서소문동 76번지앞	17	205	3,500	출입구 4개중 1개소위치변경
변경	"	"	17	205	3,500	
• 지하철 4호선 환기구 위치변경						
구분	시 설 명	규 모 (km)	위 치			비 고
기정	고속철도 4호선	L = 35.2	상계동 - 쌍문동 - 수유동 - 미아 삼거리 - 길음동 - 삼선교 - 혜화 동 - 이화동 - 서울운동장 - 퇴계 로 - 서울역 - 삼각지 - 용산 - 이 촌동 - 동작동 - 사당동 - 과천 (문원리)			남학동 12-3 일대 환기구 폐지 L = 10.20 m B = 22 m
변경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74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계획결정및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제 470 호 (73.12.1) 및 동고시 제 184 호 (75.11.13)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 145 호 (74.5.13), 동고시제 140 호 (76.8.26), 동고시 제 112 호 (78.5.12) 및 서울시고시 제 89 호 (77.3.30), 동고시 제 383 호 (81.10.23) 로 사업계획 결정된 홍은 1 구역의 5 개구역 (연희 2, 쌍문 2, 흑석 2, 돈암 3, 아현 1) 및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7.12.1),

동고시제 55 호 (81.2.20)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전동 3 구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 12 조, 동법동조 제 1 항,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및 제 14 조의 3,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5 항 내지 제 7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 1 항, 동제 7 조 (권한위임) 에 의거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 및 시민봉사실여 비치하여 관계관계인에게 보이기 한다.

1982. 7. 20.

서울특별시청

가. 사업계획 변경결정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홍은 1 구역	서대문구홍은동 5 번지일대	32,520	공공시설변경
연희 2 구역	연희동산 66 번지일대	79,564	도로계획선변경
쌍문 2 구역	도봉구쌍문동 374 번지일대	11,488	일부도로폐지
흑석 2 구역	동작구흑석동산 88 번지일대	97,180	녹지추가
돈암 3 구역	성북구돈암동 6, 9, 11, 80 번지일대	249,211	구역축소변경 일부 도로폐지, 녹지추가
아현 1 구역	마포구아현동 85 번지일대	138,857	일부도로폐지, 녹지추가

나. 사업계획 결정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전농3구역	동대문구전농동 3-9번지 산 41-4 " 답십리동산 1-2 번지일대		127,137				
다. 도면 및 조서: 별첨 (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275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82.2.3) 로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성동구판내 응봉동, 210, 218 일대 의 1 개소 (학교용지)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p>			<p>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7. 2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평)	비 고			
기정	학 교	응봉동 216 외 16 필지	14,343(4,339)	증 12,598 ㎡ (3,811명) 조정면적 244 ㎡ (74명)			
변경	학 교 (2개교)	" 210, 218 일대	26,941(8,150)				
신설	학 교	광장동 394-6 "	11,293(3,416)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류	6	62	광장동 394-6	광장동 394-6	폐 지
변경	소로	"	6	62	"	"	
다. 결정 도면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276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시행허가

1. 건설부 고시 제 53 호 (80.2.22), 동 고시 제 203 호 (81.6.12.)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7 호 (81.7.30) 동 고시 제 46 호 (82.2.3.) 동 고시 제 76 호 (82.2.18.) 동 고시 제 213 호 (82.6.4)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0 호 (82.4.9), 동 공고 제 289 호 (82.7.2) 로 공람 공고한 바 있는 지하철 3,4 호선중 서울운동장 정차장의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시행을 허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들을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지하철도과 및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계획공정부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7.21.

서울특별시장

1. 사업 시행의 위치

시내중구올지로 7가 114-1 시내중구 광희동 2가 202-1

2. 사업의 종류 및 경장

종류: 지하철 3,4 호선 건설공사
명칭: 서울운동장정차장건설사업

3. 사업 시행 규모

가. 시행면적: 5,100
나. 시행규모: 폭 24-34 미터
연장 205 미터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김기현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가. 사업착수 연월일: 82.7.21
나. 준공예정 연월일: 84.12.31

6. 사업위치도 및 계획변경도: 없음
(도면상략)

7. 공사 설계도서: 계획도면상략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물의 소재지, 지번, 그 밖에 관계문서: 별첨 (상략)

9. 토지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와 관계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상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277 호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82.2.3)

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고시된
 봉천동 662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81.12.31.)의 권한위임사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판악구청도시정비과
 가.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7. 21.

서울특별시 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학교	봉천동 681-19일대	6,030 평	폐지
변경	"	봉천동 662일대	19,916 ㎡	신설
			11,910 평	
			39,372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시설명	폭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도로	6	44	봉천동 766-2	봉천동 677-4	
변경		8	270	봉천동산 113-3	봉천동산 133	폐지
변경		6	50	봉천동산 133	봉천동산 133	폐지
변경		6	76		봉천동산 132	
신설		6	148		봉천동 676-8	
		8	74	봉천동산 133-3	봉천동산 133-3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8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55 호(81.2.20)로
 구역지정된 효창계 2 구역과 동고시
 제 184 호(75.11.13)로 구역지정된
 미아 7 구역외 23 개 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3 호(82.3.19)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내용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인다.

2. 도시재개발법 제 3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하였기 가. 고시내역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 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있습니다.

1982. 7. 21.

서울특별시장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효창 2	효창동 1.5 번지 일대	734	시행인가
미아 7	미아동 791	22,678	변경인가 (기간연기)
가락 2	가락동 산 60	9,917	"
쌍문 1	쌍문동 414	136,536	"
" 2	쌍문동 374	11,488	"
상계 1	상계동 산 161	66,080	"
상계 2	" 산 152	102,400	"
상계 3	" 107	64,820	"
연희 3	연희동 182	159,703	"
만리	만리동 198	29,223	"
응암 4	응암동 263	220,410	"
아현 1	아현동 85	138,857	"
용산 1	용산동 2 가 1	196,464	"
혹석 2	혹석동 산 88	97,180	"
본동 1	본동 126	42,246	"
신길 3	신길동 산 137	78,975	"
봉천 4	봉천동 산 101	243,010	"
신길 2	신길동 233	158,183	"
홍은 5	홍은 1 동 71,113	244,294	"
응암 2	응암동 243	192,345	"
거여 2	거여동 181	75,386	"
돈암 2	돈암동 877	60,604	"
홍은 3	홍은동 산 9	190,857	"
충정 1	충정동 545	19,033	"
봉천 7	봉천동 산 81	97,708	"
25개구역		2,562,330	

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시행기간 : 인가(변경)일로부터 86.12.30

<p>라. 설계도서 및 조서 인가구역 : 별첨 (생략) 변경인가구역 : 기인가와 동일(생략)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인가구역 : 별첨 (생략) 변경인가구역 : 기인가와 동일(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279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7. 22. 서울 특. 별 시 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주체 : 주소 : 동대문구 목동 239-1호 성명 : 신안건설 대표 박순석외 1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동대문구 망우동 90번지의 2필지 나. 면적 : 대지면적 : 19,839㎡ 건축연면적 : 22,014.425㎡ 다. 규모 : 아파트 5층 13동 360세대 상가 4층 1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2.7.22 - 83.6.10</p>																																											
<p>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등급</th> <th>류별</th> <th>번호</th> <th>폭원</th> <th>연장</th> <th>기 점</th> <th>종 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정</td> <td>소로</td> <td>3</td> <td></td> <td>6m</td> <td>64m</td> <td>망우동 90</td> <td>망우동 96</td> <td rowspan="2">난지내도로변경</td> </tr> <tr> <td>변경</td> <td>"</td> <td>3</td> <td></td> <td>6m</td> <td>58m</td> <td>"</td> <td>"</td> </tr> <tr> <td>기정</td> <td>소로</td> <td>3</td> <td></td> <td>6m</td> <td>47m</td> <td>망우동 96</td> <td>망우동 96</td> <td rowspan="2">"</td> </tr> <tr> <td>변경</td> <td>"</td> <td>3</td> <td></td> <td>6m</td> <td>47.50m</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m	64m	망우동 90	망우동 96	난지내도로변경	변경	"	3		6m	58m	"	"	기정	소로	3		6m	47m	망우동 96	망우동 96	"	변경	"	3		6m	47.50m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m	64m	망우동 90	망우동 96	난지내도로변경																																				
변경	"	3		6m	58m	"	"																																					
기정	소로	3		6m	47m	망우동 96	망우동 96	"																																				
변경	"	3		6m	47.50m	"	"																																					
<p>◎ 서울특별시 고시 제280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 주소 : 동대문구 목동 245-89호 성명 : 영광건설(주) 대표. 박노홍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동대문구 망우동 178-1호의 2필지</p>																																											

나. 면적 : 대지면적 7,706.84㎡ 건축연면적 : 9,123.97㎡ 다. 규모 : 연립주택 3층 7동 123세대					상가 층 등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2.7. . - 83.5. .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m	30m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신설	"	2		8m	62m	"	"	
기정	"	3		6m	82m	"	"	단지내 도로변경
변경	"	3		6m	86m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호 1982년도 제 1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제 1 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비 고
○ 일반회계						644,040,521		
○ 특별회계						664,611,000		
국민주택비특별회계						126,872,000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						21,500,000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67,157,000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6,453,000		
유로도로비특별회계						6,765,0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675,000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2,608,000		
수도사업비특별회계						131,531,000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286,842,000		
병원사업비특별회계						9,210,000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107,167,000		
○ 재래구호기금						2,100,000		
1982. 7. 22.								
서울특별시장 김성백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2 호

유류연동가격고시

유류연동가격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7. 22.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1. 육류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그램당)
2,150 원
- 2. 시행일
1982.2.26 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7. 23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종로구세종로 178 번지
현대건설(주)
대표 이명박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가. 위치: 강남구 압구정동 289번지의 18 필지
 - 나. 사업규모: 아파트 13 층 4 동 286 세대
 - 다. 대지면적: 22,661.25㎡ (6,250 평)
 - 타. 건축연면적: 34,649.531㎡ (10,431.43 평)
- 4. 사업시행기간: 1982. 7. . . - 1983. 8. 30.

82. 7. 23.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p>◎서울특별시 고시 제 284호</p> <p>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4 호 (82. 5.28) 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신설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호</p>		<p>(82.12.31)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리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2. 7. 23</p> <p>서울특별시 장</p>		
<p>가.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조서</p>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서구방화동 487일대	2,569	공 항 고 통 (주) 시내버스
<p>나. 지적승인 도면 2부 (도면생략)</p>				
<p>◎서울특별시 고시 제 285호</p> <p>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결정 및 지적승인</p> <p>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호 (81. 12.31)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결</p>		<p>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경기도 고양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2. 7. 24</p> <p>서울특별시 장</p>		

○ 고속철도(부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신설	지속차량기지 (지하철3호선)	경기도고양군신도읍 지축리 720-10 일대	310,75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286 호</p> <p>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정정</p> <p>1. 서울시고시 제 73 호(82.2.18) 로 결정 및 변경되고 서울시고시 118 호(82.3.19)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미관지구에 대하여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을 사용하여 도시제</p>			<p>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81.12.31)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2.7.26.</p> <p>서울특별시장</p>	
가.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정정조서				
구분	종별	연장(m)	면적(m ²)	비고
신설	4	1,650	49,500	성북동 35 - 성북동 272 (서북로)
"	4	2,200	66,000	석관동 332 - 번동 98 (장석로)
기정	4	4,000	120,000	수유동 679 - 미아동구제간 (삼양로)
변경	4	4,820	144,000	수유동 679 - 길음동 1077 (")
기정	2	9,000	216,000	원남동 - 우이동 (미아로)
변경	2	9,000	295,200	원남동 - 우이동 (미아로)
* 별첨 표시 도면과 같음(도면생략)				
<p>공 고</p> <p>◎ 서울특별시공고제 322 호</p>			<p>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p> <p>1.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져</p>	

서울특별시공고 제 110 호 ('82.3.10)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해
 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규
 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
 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거 환지에정지물 일부 변경 지
 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2. 7. 20

서울특별시장

(환지에정지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서초동 99-3 호일대
- 다. 변경면적 : 9,528 평

◎서울특별시공고제 32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44 호 (81.7.2)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416 호 (81.11.14)
 동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된 동
 대문구 회기동산 4-61 의 1 필지에 개
 하여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 제 85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2.12.31) 에 의거 이를 공
 고한다.
-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

과에 비치되어 토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7.22.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회
 기동산 4-61 의 1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호텔경영전문대학)
- 다. 사업시행면적 : 4,743.00 ㎡
- 라. 건축면적 : 389.97 ㎡
 연면적 : 1,732.78 ㎡
 (지층 : 562.87 1층 : 389.97
 2층 : 389.97 3층 : 389.97
 옥탑 : 52.36 ㎡)
- 구조 :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
 리이트 라멘조
- 마.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동
 대문구 회기동 1 번지
 학교법인 교황재단 이사장 조경석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 81.7.18
 - 82.6.30
- 사. 사업완료도면 : 첨부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326 호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39 (82.6.29)호
 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
 장) 시행허가된 도봉구 번동 49-1
 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제 85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7. 22.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 : 도봉구번동 499-1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한성운수(주시내버스주차장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091 m² (330 명)

사업내역 : 콘크리트포장 (t=15) A=6.0a
석 축 (H=2) L=28 m

4.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도봉구번동 375

한성운수(주) 대표 김인석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가) 착공년월일 : 32.4.7

나) 준공년월일 : 82.7.14

6. 공사완료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32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133 호 (81.4.20) 및 동고시 제 169 호 (82.5.9)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신정동산 109-1 번지 학교법인 명신학원 (605-5996)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문은 공람기간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2. 7. 23.

서울특별시

공 략 개 요

1. 사업시행위치 : 강서구신정동산 109-1 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신여자상업진수학교

3. 규 모 : 건물지하 1 층 지상 3 층 총 2193.0 m² (대지 8,443 m²)

4. 사업시행허가신청자 : 학교법인 명신학원

5.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 개 년간

◎서울특별시공고제 328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공인신조 (개각 및 폐기) 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공인윤 아래

와 같이 신고하여 서울특별시 회계
관제 공무원직인 규칙 제 7 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인 규정 제 9 조 및 서
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2. 7. 23.

서울특별시 장

1. 공인명 : 가. 개각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수입금출납원인
나. 폐기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분임수입금출납원인
2. 사용개시일자 : 1982.7.26.
3. 공인의인영

인	개각	폐기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분임수입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329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66 호로 환지 계획변경공람공고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리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한다.

1982. 7. 23.

서울특별시 장

(환지예정지 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 16,400㎡(1,901.2경)
- 다. 변경유치 : 강동구문남동 25-1외 1필지
- 라. 변경내용 : 사업계획변경(인) 및 환지계획변경 (인) (도정승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330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계획
계 환 공 략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23 호(78.7.11)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계획인가고시된 동양4구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41 조는 도시계획도서를 공고일로 부터 3월간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1982. 7. 24.

서울특별시 장

사 령

◎ 1982년 7월 19일자 명제 375 호

부녀청소년과장직대
행정사무관 김 기 업

서기관에 임함.
부녀청소년과장에 포함.

정책조정담당관
지방서기관 김 성 순

서기관에 임함.
시정개발담당관에 포함.

발당수원지사무소장
지방토목기정 전 기 백

토목기정에 임함.
급수과장에 포함.

동대문구건설국장
지방토목기정 장 인 식

토목기정에 임함.
치수과장에 포함.

치수과장 박 만 석
토목기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동대문구 건설국장에 포함.

서 기 관 조 제 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정책조정담당관에 포함.

명제 376 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건축기정 변 영 진

서울특별시 내무국 지방공무원 전
출을 명함. (82. 7.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비국장 장 기 찬
지방건축기정

건축기정에 임함.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
과장에 포함. (82. 7.13)

명제 377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건축기사보 박 태 수

종합민원실 요원에 임함.

<p>건축지도과 지방건축과 성 이 현</p> <p>종합민원실요원 겸무를 면함.</p> <p>령제 378 호</p> <p>중 구 지방행정사무관 최 승 용</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p> <p>강동구 세무 2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안 상</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호 1,2 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p>	<p>령제 380 호</p> <p>동 작 구 지방화공기사 유 재 하</p> <p>구의수원지사사무소</p> <p>성 동 구 지방토목기원보 서 용 대</p> <p>구의수원지사사무소</p> <p>령제 381 호</p> <p>종합건설본부 지방시설부기장 회 종 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p>
<p>◎ 1982년 7월 20 일자 령제 379 호</p> <p>시설계획과장 토 목 기 정 김 영 수</p> <p>지하철공사 파견근무. (82.7.19 ~ 82.12.31)</p> <p>도시계획과장 토 목 기 정 김 학 제</p> <p>시설계획과장 겸무.</p>	<p>관 락 구 지방토목기장 유 용 환</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색에 처함.</p> <p>종합건설본부 송 선 국 지방토목기화</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색에 처함.</p>

<p>서대문구 유학조 지방토목기과</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치수과 김영호 지방토목기과</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형제 382 호</p> <p>구로구보건소장 박보춘 지방의무기정</p> <p>원에 의하여 그 직에 면함.</p>		<p>형제 383 호</p> <p>이동우</p> <p>1981. 8. 28 파면처분을 서울고등 법원판결 (사건 82 구 109 : 82.6.24) 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하고 복직 을 명함.</p> <p>11 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형제 384 호</p> <p>성복구 이종삼 지방행정주사</p> <p>복직을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p>형제 385 호</p>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화동 김의효 강규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세무지도과 "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
형제 38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인근 장철 윤한길 권영국	종로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중구보건소 동작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은평구 " 성복구 " 강남구 "	지방보건기사보(병리) " 지방보건기원보시부 (병리)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 정 근	강 서 구 보 건 소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병리)
주 정 희	도 봉 구	총 로 구	지방보건기사보(병리)
정 경 순	은 평 구	강 서 구	지방보건기원보(병리)
송 경 진	성 북 구	동 작 구	.
이 혜 린	강남구보건소 파견근무 (82. 7.20 ~ 83.7.19)	중 구	.
이 동 숙	영등포구보건소 파견근무 (82.7.20 ~ 83.7.19)	서대문구	.
령제 38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관 준	운수 1 과 파견근무를 명함 (82.7.24 ~ 82.8.31)	종로구도시정비과	지 방 행 정 서 기
정 중 목	.	동대문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황 봉 노	.	성동구	지 방 행 정 서 기
김 영 안	.	성북구	지 방 행 성 주 사 보
령제 388 호		의한 임용미착으로 동일자 취소함.	
농 촌 지 도 소	박 수 종	령제 390 호	
농 촌 지 도 사 보		상 공 과	환 광 직
충청남도 진출을 명함.		지 방 전 기 기 사 보	
령제 389 호		지하철건설본부 파견	
구 로 구 보 건 소	유 제 분	(82.7.21 ~ 83.7.20)	
지방보건기원보(병리)		배 종 문 화 회 관	정 영 철
82. 7. 10 자 인사발령 제 344 호에		지 방 전 기 기 사 보	

<p>지하철건설본부 파견 (82.7.21 ~ 83.7.20)</p> <p style="text-align: right;">명제 391 호</p> <p>지방보건지원보시보(병리) 정 명 숙</p> <p>서대문병원 1호봉</p> <p>◎ 1982년 7월 22일 명제 392 호</p> <p>지하철 운영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조 용 현</p>	<p>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명함. (82.7.26 ~ 82.8.9)</p> <p>지하철 운영사업소 김 락 준 지방행정주사보</p> <p>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명함. (82.7.26 ~ 82.8.9)</p> <p>◎ 1982년 7월 23일 명제 393 호</p> <p>부산지하철시동구민방위과 우 형 식 지방행정주사보</p> <p>서울특별시 견입을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명제 394 호			
<p>성 명</p> <p>송 수 성</p> <p>임 병 택</p> <p>홍 대 영</p> <p>김 경 영</p>	<p>발 령 사 항</p> <p>기획담당관 기획조정제장</p> <p>용 산 구</p> <p>행 정 과 지 도 제 장</p> <p>연 료 과 석 유 가 스 제 장</p>	<p>원 부 서</p> <p>내 무 국</p> <p>행 정 과 지 도 제 장</p> <p>연 료 과 석 유 가 스 제 장</p> <p>관 광 과 관 광 지 도 제 장</p>	<p>직 급</p> <p>지방행정사무관</p> <p>"</p> <p>"</p> <p>"</p>
<p>◎ 1982년 7월 24일 명제 395 호</p> <p>감서구 청소과 강 창 언 지방행정주사</p> <p>관악구</p>	<p>관악구 재무과 진 재 훈 지방행정서기</p> <p>의전과 파견근무를 명함. (82.7.26 ~ 82.12.2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p>		